www.humanrigh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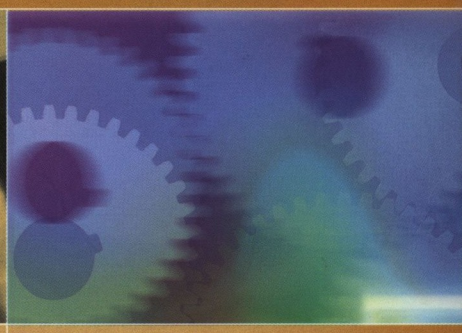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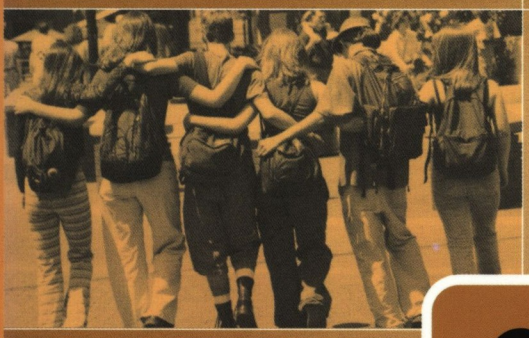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3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번역 및 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기갑 교수
김현정, 류희진, 박진아, 신소현
문지혜, 김지영, 임예준

한국어판 발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EM016446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국가인권위원회

발 간 사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의 큰 임무 중 하나는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출범 이후 우리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상황을 점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즉, 인권정책을 권고함에 있어서 그 주요기준을 국제인권규범에 두었고 각종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의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국제인권규범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접근의 한계와 전문성에 비추어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다 보니 해당 규범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거기에 기초한 업무 처리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에 부딪혀 왔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1년 이상의 심혈을 기울여 주요인권조약의 모니터링 기관에서 발표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완역 출간한 것은 향후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6개의 인권조약의 일반논평은 자료의 방대함으로 인해 국내에서 어느 기관도 그 완역을 시도하지 못한 것이었다. 바라건대 이 노작이 우리 위원회의 각 담당자들의 책상 위에 놓여져 국제인권규범의 바른 해석을 함에 있어 참고서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에게도 크게 활용될 수 있다면 망외의 기쁨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어려운 작업의 번역을 맡아 주신 고려대학교 박기갑 교수님을 비롯한 동대학 국제법 석박사 연구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나아가 이 작업을 기획하고 번역을 감수한 인권정책본부 국제인권팀 관계자의 노고에 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 영 황

서 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국제인권법에 대한 관심은 전례 없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위원회법이 인권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 주요 근거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 찾고 있고, 인권위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위는 설립 이래 인권정책 안건과 진정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인권위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세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국제인권법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해 소상한 설명이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 국제인권법에 관한 언급은 각종 검토보고서에서 관련조약의 조문 나열로 끝나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많은 실무자들은 스스로 불만을 갖게 되었고 보다 심화된 국제인권법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일반논평은 인권조약에 따라 만들어진 조약위원회(소위 조약감시기구)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해석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조약위원회는 추상적인 조약의 내용을 해석을 통해 풍부하게 만듦으로써 국제인권법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다. 이것은 마치 헌법재판소가 추상적인 헌법을 해석을 통해 점점 풍부한 내포를 만듦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헌법의 실질적 외연을 넓혀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조약감시기구가 수행하는 해당 인권조약에 대한 일반적 해석(일반논평)은 인권조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논평은 그 자체로서는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법이 아니나 국제인권법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인권조약에 대한 설명 자료가 이러저러하게 있지만 이 일반논평을 떠나서는 그러한 설명도 큰 의미가 없다. 조약감

시기구가 인정하지 않는 인권조약의 해석은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논평의 이런 중요성을 인해 인권위는 지난 1기 시절부터 우리가 가입한 6대 인권조약의 일반논평을 하루 빨리 번역하여 실무에 반영하고자 작업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그 업무는 생각한 것보다 쉽지 않았다. 먼저 번역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작년 여름이 되기 직전 인권위는 이 작업을 새로이 시작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결말을 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번역 작업을 전문가인 고려대 국제법 교실의 박기갑 교수님과 그의 석박사 제자들(김현정, 임예준, 박진아, 문지혜, 류희진, 김지영, 신소현)에게 의뢰하기로 하였다. 꼬박 한 학기 동안의 수고로 일반논평의 초벌 번역은 끝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사업의 책임자로서 박교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심심한 고마움을 전한다. 그러나 이 작업이 끝나는 것은 또 다시 수개월이 걸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초벌번역의 오류를 잡고 전체적으로 문장을 다듬는 작업도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이 사업의 담당자인 국제인권팀의 오유진 선생의 몫이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지난 몇 달간 주말 휴일을 반납하였다. 그의 노고를 들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바라는 바는 산고의 과정을 통해 출간된 이 일반논평이 부디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인권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일조했으면 하는 것이다. 실무자들은 인권정책과 관련된 보고서이든 진정사건의 보고서이든 검토기준으로서 국제인권법을 거론할 때 반드시 이 일반논평을 보고 해당 부분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 검토기준에 관한 한 한 단계 높은 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국제인권법을 전공하는 연구자 및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저작물이 광범하게 사용된다면 지난 1년간 이 작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망외의 기쁨일 것이다.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박 찬 운

목 차

Ⅲ.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권고 ····· 3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Ⅰ(협약 제4조) ····· 4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일반 권고 Ⅱ ····· 5
당사국들의 보고에 관한 일반권고 Ⅲ ····· 6
당사국들의 보고에 관한 일반권고 Ⅳ(협약 제1조) ····· 8
당사국들의 보고에 관한 일반권고 Ⅴ(협약 제7조) ····· 9
기한을 넘긴 보고서에 관한 일반권고 Ⅵ ····· 11
협약 제4조의 이행에 관한 일반권고 Ⅶ ····· 13
협약 제1조 1항, 4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일반권고 Ⅷ ····· 15
협약 제8조 1항의 적용에 관한 일반권고 Ⅸ ····· 16
기술적 지원에 관한 일반권고 Ⅹ ····· 17
비시민권자에 관한 일반권고 Ⅺ ····· 18
승계국에 관한 일반권고 Ⅻ ····· 19
인권 보호에 있어 법집행공무원의 훈련에 관한 일반권고 XIII ····· 20
협약 제1조 1항에 관한 일반권고 XIV ····· 21
협약 제4조에 관한 일반권고 XV ····· 22
협약 제9조의 적용에 관한 일반권고 XVI ····· 24
협약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가 기구의 설립에 관한 일반권고 XVII ··· 25
인도에 반하는 죄를 기소하기 위한 국제 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일반권고 XVIII · 27
협약 제3조에 관한 일반권고 XIX ····· 29
협약 제5조에 관한 일반권고 XX ····· 30
자결권에 관한 일반권고 XXI ····· 32
난민과 실향민에 관한 협약 제5조에 관한 일반권고 XXII ····· 34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XXIII ····· 36
협약 제1조에 관한 일반권고 XXIV ····· 38

인종차별의 성(gender)에 관련된 차원의 일반권고 XXV ····· 40
협약 제6조에 관한 일반권고 XXVI ····· 42
집시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XXVII ····· 43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불관용에 관한(Related Intolerance)
세계회의의 후속 조치를 위한 일반권고 XXVIII ····· 51
협약 제1조 1항(혈통)에 관한 일반권고 XXIX ····· 55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XXX ····· 64
형사 사법 제도의 운영 및 작용에 있어서의 인종차별 방지에 관한
일반 권고 XXXI ····· 72

CONTENT

Ⅲ. GENERAL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91

General recommendation Ⅰ concerning States parties' obligations (art. 4 of the Convention) ····· 91

General recommendation Ⅱ concerning States parties' obligations ····· 91

General recommendation Ⅲ concerning reporting by States parties ····· 92

General recommendation Ⅳ concerning reporting by States parties (art. 1 of the Convention) ····· 93

General recommendation Ⅴ concerning reporting by States parties (art. 7 of the Convention) ····· 93

General recommendation Ⅵ concerning overdue reports ····· 94

General recommendationⅦ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 95

General recommendation Ⅷ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 paragraphs 1 and 4, of the Convention ····· 96

General recommendation Ⅸ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 96

General recommendation Ⅹ concerning technical assistance ····· 97

General recommendation Ⅺ on non-citizens ····· 97

General recommendation Ⅻ on successor States ····· 98

General recommendation XIII on the training of law enforcement officials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 98

General recommendation XIV on article 1,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 99

General recommendation XV on article 4 of the Convention ····· 100

General recommendation XVI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9 of the Convention ····· 101
General recommendation XVII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stitutions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 101
General recommendation XVIII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tribunal to prosecute crimes against humanity ····· 102
General recommendation XIX on article 3 of the Convention ····· 103
General recommendation XX o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 104
General recommendation XXI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 105
General recommendation XXII on article 5 of the Convention on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 106
General recommendation XXIII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 107
General recommendation XXIV concerning article 1 of the Convention ····· 109
General recommendation XXV on gender-related dimensions of racial discrimination ····· 110
General recommendation XXVI on article 6 of the Convention ····· 111
General recommendation XXVII on discrimination against Roma ····· 111
General recommendation XXVIII on the follow-up to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 116
General recommendation XXIX on article 1,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Descent) ····· 119
General recommendation XXX on discrimination against non-citizens ····· 124
General recommendation XXXI on the preven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administration and functioning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129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Ⅲ.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권고

Ⅲ.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가 채택한 일반권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 2항에 의하여, 본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접수된 보고와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제안과 일반권고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을 경우 이 논평과 함께 유엔 총회에 보고된다. 본 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31개의 일반권고를 채택하였다.

제5차 회기 (1972년)*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일반권고 I
(협약 제4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에 따라 제출된 당사국들의 보고서에 대한 제5차 회기에서의 고려사항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는 상당수의 당사국들이 동 협약의 제4조(a)와 (b)에 규정된 입법을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행(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동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에 관련하여)은 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에게 의무이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입법이 불충분한 당사국들은 자국의 국내 입법 절차에 따라 동 협약 제4조(a)와 (b)의 요건에 합치되는 추가 입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 문서 A/87/18에 포함.

제5차 회기 (1972)*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일반 권고 Ⅱ

본 위원회는 1970년 1월 28일 위원회의 통보(CERD/C/R.12)에 언급된 정보는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당사국들의 경우 그 정보에 대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견해를 표한 몇몇 정부 보고서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 1항에 의하면 모든 당사국들이 채택하고 협약의 규정을 발효시킨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1970년 1월 28일 위원회의 통보에 열거된 정보의 모든 종류는 당사국들이 협약 하에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통보는 개별 국가에 인종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당사국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모든 국가들의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앞서 언급한 위원회의 통보에 제시된 표제에 합치하는 필요한 정보가 보고서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 문서 A/87/18에 포함.

제6차 회기 (1972)*

당사국들의 보고에 관한 일반권고 Ⅲ

본 위원회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주의적 체제와의 관계에 대한 유엔 기관의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별국가가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일부 당사국들의 보고서를 고려하였다.

본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전문 10항에서 당사국들이 "모든 형태의 인종분리 및 인종차별이 없는 국제사회를 건설할 것"을 특히 "결의"하였음에 주목하고,

또한 동 협약 제3조에서 "당사국들은 특히 인종분리와 아파르트헤이트(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를 규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더 나아가, 본 위원회는 유엔 총회가 결의 제2784(XXVI)호 제 Ⅲ부에서 본 위원회의 제2차 연례 보고서를 검토하고, 본 위원회가 제출한 특정 견해와 권고를 승인한 후, "남아프리카와 무역을 하는 모든 상대국은 남아프리카와 남로디지아의 불법정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 원칙과 목적의 지속적인 침해를 장려하는 행동을 삼가 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협약의 규정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적 차원에서 채택된 조치들은 협약의 제 원칙이 모든 곳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본 위원회는 협약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제출한 보고서에, 이를 선택한 어느 당사국

* 문서 A/87/18에 포함.

이든지,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권의 외교적, 경제적, 그리고 여타 관련 사항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환영한다.

제8차 회기 (1973)*

당사국들의 보고에 관한 일반권고 Ⅳ
(협약 제1조)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제7차와 제8차 회기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에 의거하여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들을 고려하고,

당사국들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유념하고,

당사국들이 협약 제1조에 언급된 인구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9조에 의거한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 문서 A/90/18에 포함.

제15차 회기 (1977년)*

당사국들의 보고에 관한 일반권고 V
(협약 제7조)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을 유념하고,

인종차별로 이어지는 편견과 싸우고, 인종과 민족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용 그리고 우정을 증진시키며, 유엔헌장과 유엔 총회에 의해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선언들, 다른 관련 문서들의 원칙과 목적을 보급하는 것이 인종차별 철폐에 있어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신하며,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협약 제7조 상 의무들은 자국의 관할권 하의 영토에서 인종차별이 행해지지 않는다고 선언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모든 당사국들은 동 협약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보고서에 제7조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을 고려하고,

협약 제9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에 당사국이 채택하고 협약 제7조 규정을 발효시킨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과, 그러한 정보가 대부분 일반적이고 피상적이라는 사실을 유감을 표하며,

협약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보다 심화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 문서 A/32/18에 포함.

1. 아직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모든 당사국에게 – 협약 제9조에 따라 제출하게 되는 차회 보고서 또는 차회 정기 보고서 제출 기일 이전의 특별 보고서에서 – 당사국이 채택하고 협약 제7조의 규정을 발효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2. 협약 제7조에 따라, '정보'는 "교수, 교육, 문화, 정보 분야에서" 채택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는 사실에 대한 당사국의 주의를 요청한다. 이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a) "인종차별을 야기하는 편견의 퇴치",

(b) "국가와 인종, 민족 집단 사이의 이해, 관용 그리고 우호의 증진",

(c)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뿐 만 아니라,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선언의 목적과 원칙들을 보급하는 것".

제25차 회기 (1982년)*

기한을 넘긴 보고서에 관한 일반권고 Ⅵ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비준만으로는 협약에 의해 설립된 통제 체제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고,

협약 제9조가 당사국들에게 협약의 규정들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들에 관한 최초 보고서와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현재 62개 국가로부터 최소한 89개 되는 보고서가 제출기한을 넘겼고, 그러한 보고서들 중 42개 보고서가 15개 국가에 의한 것으로, 이들 국가들 각각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미제출 보고서를 가진 상태이며, 1973년과 1978년 사이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4개의 최초 보고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태임을 언급하며,

사무총장을 통하여 당사국들에 전달된 독촉문서나 유엔 총회에 제출된 연례 보고서에 관련 정보를 포함시킨 것이 모두 희망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유감이며,

유엔 총회에 다음 사항들을 요청한다.

(a) 상황을 주시하고,

* 문서 A/37/18에 포함.

(b) 유엔 총회가 당 위원회가 협약에 따른 협약 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사용한다.

제32차 회기 (1985)*

협약 제4조의 이행에 관한 일반권고 Ⅶ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16년간 당사국들의 정기 보고서와 당사국들의 제6차, 7차, 8차 정기 보고서에서 100건 이상의 사례를 고려하였고,

1972년 2월 24일의 일반권고 Ⅰ과 1973년 5월 4일의 결정 3(Ⅶ)을 상기하고 재확인하며,

다수의 보고서에서 당사국들이 인종차별 행위와 관련한 협약 제4조의 이행에 관한 특정한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을 만족하며,

그러나 다수의 당사국에서 협약 제4조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다수의 당사국들이 협약 제4조 (a), (b)의 요건들을 아직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제4조의 첫 번째 조항에 따라서, 당사국들은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원칙과 협약 제5조에 명시된 권리들에 관하여, "모든 차별이나 이를 촉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채택할 임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며,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장하거나 촉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협약 제4조의 예방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 문서 A/40/18에 포함.

1. 그 법률이 협약 제4조 (a), (b)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당사국들이 동 규정의 조항의 의무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

2. 아직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사국들은 본 위원회에 제4조 (a), (b)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범위에 관해 정기 보고서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서에서 문서의 관련 부분을 인용할 것을 요청한다.

3. 또한, 아직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사국들은 인종차별 행위와 특히 제4조 (a), (b)에서 다루어지는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의 국내관할법원과 기타 국가 기관의 결정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정기 보고서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제38차 회기 (1990년)*

협약 제1조 1항, 4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일반권고 Ⅷ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개인을 특정한 인종 또는 종족 집단의 구성원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당사국들의 보고서를 고려하였고,

그러한 신원 확인은, 그 반대의 경우를 정당화할 수 없는 한, 개인의 자율적 확인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다.

* 문서 A/45/18에 포함.

제38차 회기 (1990년)*

협약 제8조 1항의 적용에 관한 일반권고 Ⅸ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전문가들의 독립성에 대한 존중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감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임을 고려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8조 1항을 상기하며,

국가, 기구, 집단의 대표자들이 전문가들, 특히 국가 보고관으로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향을 경계하며,

그들이 인정된 공정성을 가진 독립된 전문가로서 자신의 개인 역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구성원들의 지위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문서 A/45/18에 포함.

제39차 회기 (1991년)*

기술적 지원에 관한 일반권고 X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 관여하는 이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세미나 또는 워크숍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유엔 총회 제45차 회기에서 승인된 인권조약기구 의장들의 제3차 회의의 권고를 주목하고,

특정 국가들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보고 의무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된 훈련 과정과 워크숍이 당사국 보고서 준비를 맡고 있는 관리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으며,

1. 사무총장이 이해 당사국과의 협의 하에 보고서를 책임지는 관리들에 대한 적절한 훈련 과정과 워크숍을 실행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조직할 것을 요청한다.

2.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의 전문가들과 인권센터 직원들의 업무가 그러한 훈련 과정과 워크숍의 수행에 있어 적절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한다.

* 문서 A/46/18에 포함.

제42차 회기 (1993년)*

비시민권자에 관한 일반권고 XI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항은 인종차별을 정의한다. 제1조 2항은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는 당사국의 행위를 본 정의에서 제외한다. 제1조 3항은 비시민 중에서도 당사국이 특정 국적에 대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제1조 2항을 제한한다.

2. 본 위원회는 제1조 2항이 당사국이 외국인에 대한 입법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종종 해석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외국인에 대한 입법과 그 이행에 관하여 충분히 보고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3. 더 나아가 본 위원회는 제1조 2항이 다른 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인정되고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문서 A/48/18 에 포함.

제42차 회기 (1993년)*

승계국에 관한 일반권고 XII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국가들의 보편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해체의 결과로 인한 승계국의 출현을 유념하며,

1. 아직 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승계국의 경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수탁자인 사무총장에게 확인하여, 만약 피승계국이 협약의 당사국이었다면 지속적으로 협약 상 의무에 구속될 것을 권장한다.

2. 아직 당 조치를 취하지 않은 승계국의 경우, 만약 피승계국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청한다.

3. 승계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 1항에 따라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가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를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승인한다고 선언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제42차 회기 (1993년)*

인권 보호에 있어 법집행공무원의 훈련에 관한 일반권고 XIII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1항에 따라, 당사국들은 국가와 지역적 차원의 모든 공권력과 공공기관이 인종차별 관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더 나아가 당사국들은 동 협약 제5조에 열거된 권리를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 출신 민족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보장할 책임을 지고 있다.

2. 이러한 의무의 수행은 경찰력, 특히 구금이나 체포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 법집행공무원과, 이들이 협약 상 자국이 지고 있는 의무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법집행공무원들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출신 민족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의 인권을 유지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3. 동 협약 제7조를 이행함에 있어,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법집행공무원의 훈련을 심의하고 개선하여 협약의 기준과 "법집행공무원을 위한 행동강령(1979년)"이 충분히 이행될 수 있기를 요청한다. 당사국들은 정기 보고서에 이에 관한 각각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문서 A/48/18에 포함.

제42차 회기 (1993년)*

협약 제1조 1항에 관한 일반권고 XIV

1.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는 법의 평등한 보호와 함께, 차별금지는 인권 보호의 기본적 원칙을 구성한다. 본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항의 인종차별에 관한 정의의 일부 특성에 당사국들이 주목하기를 희망한다. "기초한(based on)"이란 문구는 전문 7항의 "근거로(on the grounds of)"라는 문구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차별이 특정 권리와 자유를 해칠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다면, 이는 동 협약에 배치된다. 이는 인종차별을 야기하거나 영구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법이나 관행을 무효화하여야 한다는 협약 제2조 1항 (c)에 따라 당사국에 부과된 의무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본 위원회는 처우를 차별화하는 것은, 그러한 차별화의 기준이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거나 협약의 제1조 4항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에 한하여 차별을 구성하지 않음을 주시한다. 그러한 기준을 고려함에 있어, 위원회는 특정 행위가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것이다. 특정 행위가 협약에 배치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회는 그 행위가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의해 구별되는 특정 집단에 대하여 정당화할 수 없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다.

3. 협약 제1조 1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권리와 자유는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 문서 A/48/18에 포함.

제42차 회기 (1993년)*

협약 제4조에 관한 일반권고 XV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을 때, 협약 제4조는 인종차별 철폐의 중심이 되는 규정으로 간주되었다. 그 당시에는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부활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 인종 우월주의적 관념의 전파와 인종 폭력을 촉발하는 조직적 행위의 금지는 당연히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후, 본 위원회는 출신 종족에 근거한 조직화된 폭력과 종족 간 차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데 대한 증거를 입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4조의 이행은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다.

2. 본 위원회는 제4조가 의무적 조항임을 설명한 일반권고 Ⅶ를 상기한다. 이러한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적절한 입법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종폭력의 위협과 행위는 다른 유사 행위를 낳기 쉬우며, 적대적인 분위기를 양산하므로 즉각적인 개입만이 효과적인 대응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3. 제4조 (a)는 당사국들이 4가지 분류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ⅰ) 인종우월주의나 인종 증오에 바탕을 둔 관념의 전파, (ii) 인종 증오에 대한 촉발, (iii) 타 피부색이나 종족적 기원이 다른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행위, (iv) 이러한 행위의 촉발.

4. 본 위원회는 인종우월주의나 증오에 바탕을 둔 모든 관념의 전파를 금지하는 것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양립한다고 본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d)(viii)에서 재확인 되고 있다. 이의 제4조와의 관련성은 제4조 자체에서 확인된다. 시민들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은 세계인권선언 제29조

* 문서 A/48/18에 포함.

2항에서 구체화 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인종주의적 관념을 전파하지 않을 의무는 특히 중요하다. 나아가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동 규정에 의하면, 차별, 증오, 폭력을 촉발하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를 옹호하는 것은 법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5. 제4조 (a)는 인종주의적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역시 범죄화 하는데, 본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상기 3항에 언급된 인종주의적 활동에 포함한다. 즉, 인종과 민족의 차이에 근거한 활동에 포함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국내법과 그의 이행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

6.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법질서 내에서, 한 조직의 구성원이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촉발하기 이전에 그 조직을 불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본 위원회는 제4조 (b)가 그러한 국가들에게 가능한 조기에 그러한 조직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예의 주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본다. 조직화된 보급 활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들은 불법으로 선언되고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직에 대한 참여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되어야 한다.

7. 협약 제4조 (c)는 공공기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행정 차원의 공공기관은 동 조항에 구속된다.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이러한 의무들을 준수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제42차 회기 (1993년)*

협약 제9조의 적용에 관한 일반권고 XVI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들은 협약의 제 규정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되도록 한다.

2. 당사국들의 이러한 의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일부 보고서들이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상황을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3.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회는 한 당사국이 동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 기타 당사국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유일한 절차상 방법인 협약 제11조를 염두에 두고, 각 당사국들이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협약 제9조의 규정을 상기하기를 희망한다.

* 문서 A/48/18에 포함.

제42차 회기 (1993년)*

협약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가 기구의 설립에 관한 일반권고 XVII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당사국들의 관행을 고려하고,

협약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가 기구의 설립을 더욱 장려할 필요성을 확신하고,

협약의 이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1. 당사국들은 1992년 3월 3일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1992/54에 첨부된 국가 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준용하여 국가 위원회나 다른 적절한 기구의 설립을 권고한다. 이러한 기구는 다음의 목적에 기여토록 한다.

(a)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별 없는 인권의 향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b) 인종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검토하고,

(c) 협약의 규정과 입법의 합치 여부를 감시하고,

(d) 당사국의 협약 상 의무에 관하여 일반 시민에게 교육하고,

* 문서 A/48/18에 포함.

(e)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있어 정부를 지원한다.

2. 또한, 그러한 위원회가 이미 설립된 곳에서는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와 당해 당사국 간의 의견교환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러한 국가 위원회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가능한 정부대표에 포함될 것을 권고한다.

제44차 회기 (1994년)*

인도에 반하는 죄를 기소하기 위한 국제 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일반권고 XVIII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인종적, 민족적 동기에 의한 학살과 잔학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경계하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범죄의 발생과 재발의 원인이 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죄, 그리고 1949년 제네바협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에 따른 중대한 침해를 기소하기 위한 일반 관할권을 가진 국제 재판소를 시급히 설립할 필요성을 확신하고,

이러한 문제에 관한 국제법위원회의 작업과 유엔 총회가 1993년 12월 9일 결의 48/31에서 이를 고무하였다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전(前) 유고슬라비아 영토 내에서 행해진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침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개인의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재판소 설립에 관한 1993년 5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72호(1993)를 유념하고,

1. 살인, 몰살, 노예화, 추방, 투옥, 고문, 강간 그리고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비인도적 행위, 그리고 1949년 제네바협약과 1977년 추가의정서 상의 중대한 침해를 포함한,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죄를 기소하기 위한 일

* 문서 A/49/18에 포함.

반 관할권을 가진 국제 재판소가 시급히 설립되어야 함을 고려한다.

2. 사무총장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의 관할 기관과 기구들에게 본 권고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3.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상기 1항에 언급한 범죄들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인권센터가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확보하여 국제 재판소가 설립되는 즉시 재판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제47차 회기 (1995년)*

협약 제3조에 관한 일반권고 XIX

1.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자국의 관할권 영토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종 분리와 아파르트헤이트(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를 예방, 금지, 그리고 근절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한 협약 제3조에 대한 당사국들의 주의를 요청한다. 아파르트헤이트(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에 관한 언급은 남아프리카에 한정된 것일 수 있지만, 채택된 이 규정은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 분리를 금지한다.

2. 본 위원회는 이런 성질의 모든 관행들을 근절하여야 할 의무에는 각 국내에서 정부에 의하여 착수되거나 용인된 관행들 또는 국외 세력에 의하여 부과된 관행의 결과를 근절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믿는다.

3. 본 위원회는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인종분리의 상황은 일부 국가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반면, 부분적인 인종분리 상황은 사인의 행동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로서 발생할 수 있음을 주시한다. 많은 도시들의 거주 형태는 집단의 수입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데, 이는 종종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의 차이와 결합하여, 거주자들은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개인들은 인종적 요소가 다른 요소와 결부된 차별 형태로 고통 받는다.

4.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인종분리의 상황이 공권력에 의한 유발이나 직접적인 관여가 없어도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분리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경향을 감시하고, 그에 뒤따르는 부정적인 결과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며, 정기 보고서에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

* 문서 A/50/18에 포함.

.제48차 회기 (1996년)*

협약 제5조에 관한 일반권고 XX

1. 협약 제5조는 당사국들이 인종차별 없이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 규정된 자유와 권리가 열거적 규정(exhaustive list)이 아님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협약 전문에서 상기하고 있듯이,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서 유래한다. 국제인권규약은 이러한 대부분의 권리들을 구체화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당사국들은 인권을 인정하고 인권의 향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당사국의 법질서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권의 행사에 있어 인종차별이 없어야 함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협약 제5조는 규정 자체에서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창출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며 인정됨을 나타낸다. 동 협약은 국가들에게 이러한 인권의 향유에 있어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할 의무를 부과한다.

2. 국가가 명시적으로 자국의 관할권 하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협약 제5조에 열거된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한의 목적이나 효과가 국제 인권 기준의 본질적인 부분인 협약 제1조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이러한 제한이 인종차별을 수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심층 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

3. 재판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제5조에 언급된 권리와 자유는 해당 국가 내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할 권리, 투표를 하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권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이다.

4. 당사국은 동 협약 제5조에 규정된 각각의 권리와 자유의 비차별적인 이행에 관하여

* 문서 A/51/18에 포함.

보고하도록 요청 한다.

5. 동 협약 제5조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 및 그와 유사한 권리들은 당사국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한 보호는 공공 기관을 이용하거나, 사적 기관의 활동을 통해서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국은 동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협약 제9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이행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사적 기관이 권리의 행사나 기회의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당사국은 그 결과가 인종차별을 창출하거나 영속화하는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지 않도록 책임져야 한다.

제48차 회기 (1996년)*

자결권에 관한 일반권고 XXI

1. 본 위원회는 종족이나 종교 집단 또는 소수자들이 공동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주장에 대한 근거로 자결권을 언급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2. 민족의 자결권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는 유엔헌장 제1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조 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 인권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자결권 외에도 종족, 종교, 또는 언어적 소수자가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3. 본 위원회는 1970년 10월 24일 유엔 총회 결의 제2625(XXV)호에 의하여 승인된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 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에 관한 선언"에 따라, 민족의 자결권을 증진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자결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연대하거나 개별적인 활동을 통하여, 유엔헌장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회는 1992년 12월 18일 유엔 총회 결의 제47/135에 의하여 채택된 "민족 또는 종족, 종교 그리고 언어적 소수 민족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 선언"에 대하여 정부가 주목하기를 바란다.

4. 자결권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구별되어야 한다. 민족 자결권은 모든 민족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자신의 경제, 사회, 문화적 개발을 추구할 권리라는 내적인 측면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

* 문서 A/51/18에 포함.

조 (c)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단계의 공공업무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의 권리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적 기원을 근거로 한 차별 없이 전체 인구를 대표하여야 한다. 자결의 외적인 측면은 모든 민족이 평등권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 공동체에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입장을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식민지주의로부터의 민족의 해방 및 민족을 외국인의 정복, 지배, 착취에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5. 일국 내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제 인권 문서들, 특히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고수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 인종, 종족, 부족, 종교 또는 다른 이유에 근거한 차별 없는 개인 권리 보호는 정부 정책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와 다른 관련 국제 문서에 따라 정부는 종족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권리, 특히 존엄한 삶을 영위할 권리, 그들의 문화를 보존할 권리, 국가 성장의 결실을 균등하게 공유할 권리, 그리고 자신이 시민인 국가의 정부에서 역할 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각국의 헌법 체제 내에서 자국의 시민으로 구성된 종족 또는 언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경우 그러한 사람들 또는 집단의 정체성 보존과 특히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6. 본 위원회는 "우호관계에 관한 선언"에 따라, 위원회의 어떠한 행동도 평등권원칙, 민족자결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영토 내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정부를 가진 독립국가와 주권의 영토적 통합성이나 정치적 통일성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와해시키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위원회는 국제법이 하나의 국가에서 분리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각 민족의 일반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는 평화를 위한 의제(제17항 이하)에 표명된 견해를 따른다. 즉, 국가의 분열은 평화와 안보의 유지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호에도 해로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동의에 기초한 합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제49차 회기 (1996년)*

난민과 실향민에 관한 협약 제5조에 관한 일반권고 XXII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외국의 군사적, 비군사적, 그리고/또는 종족 분쟁이 세계 도처에서 종족적 요소를 이유로 한 대규모의 난민과 실향민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계인권선언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선언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고, 특히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고려하고,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가 일반적으로 난민의 보호를 위한 국제 체제의 주요 법원임을 상기하고,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와, 협약 제5조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일반권고 XX(48)에 모든 당사국이 주목하여, 동 협약이 당사국에게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데 있어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제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반복한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a) 모든 난민과 실향민은 안전한 상황에서 자유로이 본국으로 귀환할 권리를 가진다.

* 문서 A/51/18에 포함.

(b) 당사국은 난민과 실향민의 귀환이 자발적이도록 하며, 강제송환금지원칙과 강제추방금지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

(c) 모든 난민과 실향민은 본국으로 귀환한 후 분쟁 중 박탈된 재산을 회복할 권리가 있으며 회복할 수 없는 재산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강박에 의한 재산에 관한 약속이나 성명(commitments or statement)은 무효이다.

(d) 모든 난민과 실향민은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 모든 차원의 공적 업무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복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1차 회기 (1997년)*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일반권고 XXIII

1.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중 특히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에 의거한 당사국의 보고서 검토 시, 토착민의 상황은 항상 세심한 고려와 관심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토착민에 대한 차별은 협약의 범주에 속하며, 그러한 차별과 싸우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2. 본 위원회는 유엔 총회가 1994년 12월 10일 향후 10년을 "세계 토착민을 위한 10년"으로 선언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규정이 토착민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3. 본 위원회는 세계 여러 지역의 토착민들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있어 차별을 받아왔고 박탈당하였으며, 특히 그들의 토지와 자원을 식민통치자와 상업 회사 그리고 국영 기업에 의하여 빼앗겼으며, 아직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와 역사적 정체성의 보존은 위협받아왔고, 아직도 위협받고 있다.

4.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에게 특히 다음 사항들을 요청한다.

(a) 토착민들의 독특한 문화, 역사, 언어, 생활 방식을 그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보존을 증진한다.

(b) 토착민족 구성원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 특히 토착민의 출신과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

* 문서 A/52/18에 포함, 첨부 V.

한다.

(c) 토착민들에게 자신들의 문화적 특성과 일치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적 및 사회적 개발을 허용하는 조건을 제공한다.

(d) 토착민족 구성원들이 공적 생활에서의 효과적인 참여와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 및 이해와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그들의 동의 없이 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e) 토착민 공동체가 그들의 문화적 전통과 관습을 행하고 부흥시키며, 그들의 언어를 보존하고 사용할 권리의 행사를 보장한다.

5. 본 위원회는 특히 당사국들에게 토착민들이 그들의 자치지역, 영토, 자원들을 소유, 개발, 통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토착민들이 전통적으로 소유하거나 거주한 토지와 영토를 박탈당하거나 또는 그들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토지와 영토를 반환할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실질적인 이유로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청구권은 적절하고 공평하며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권리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한 보상은 가능한 토지와 영토로 제공되어야 한다.

6. 본 위원회는 더 나아가 자국 영토에 토착민이 존재하는 당사국들에게 협약의 모든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토착민의 상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정기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제55차 회기 (1999년)*

협약 제1조에 관한 일반권고 XXIV

1. 본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항의 정의에 따라 동 협약이 상이한 인종, 민족 또는 종족 집단 또는 토착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위원회가 당사국들의 정기 보고서를 적절히 고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사국들은 자국 영토 내의 그러한 집단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9조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된 정기 보고서와 위원회에 접수된 다른 정보에 의하면, 다수의 당사국들이 다른 집단은 무시하는 반면에 자국 영토상의 일부 민족이나 종족 집단 또는 토착민들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다. 특정한 기준은 모든 집단에 대하여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당사자들의 수적인 면과 인구 내의 대다수 또는 다른 집단과 상이한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3. 일부 당사국들은 자국 시민이나 자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종족이나 민족의 기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으나, 어떠한 집단이 종족 집단이나 토착민을 구성하고, 그와 같이 인정되어야 하며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자유재량으로 결정한다. 본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구체화된 규범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준과 함께, 그러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정한 권리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동시에 위원회는 종족 집단이나 토착민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초래하는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한 국가의 인구 내 다양한 집단에 대해 상이한 처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국들의 주의를

* 문서 A/54/18에 포함, 첨부 V.

요청한다.

4. 본 위원회는 1973년 제8차 회기에서 채택된 일반권고 Ⅳ와 동 협약 제9조 1항에 따라 당사국들이 제출하는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 (CERD/C/70/Rev.3) 제8항을 상기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정기 보고서에 인구통계학적 구성에 관한 관련 정보를 동 협약 제1조 규정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로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제56차 회기 (2000년)

인종차별의 성(gender)에 관련된 차원의 일반권고 XXV

1. 본 위원회는 인종차별이 남성과 여성에게 항상 동등하게 또는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인종차별이 여성에게만 또는 주로 여성에게, 또는 여성에게는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또는 남성과는 다른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존재한다. 만약 공적이거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생활 경험에 대한 명확한 인정이나 이해가 없다면, 그러한 인종차별은 종종 발견되지 못할 것이다.

2. 특정한 형태의 인종차별은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금 또는 무력 충돌의 상황에서 특정한 인종 또는 종족 집단의 구성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토착민 여성에 대한 강제불임, 비공식적 영역의 고용 여성 또는 해외에서 고용된 가사 노동 여성에 대한 고용주의 인권유린 등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일 수 있다. 인종차별은 인종 편견에 의한 강간으로 인한 임신과 같이, 주로 여성에게 또는 여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부 사회에서는 이러한 여성 강간 피해자가 배척당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들은 법체계상의 성별 편견과 사적 생활 영역에서의 차별과 같은 성(gender)에 관련된 장애요인들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한 구제조치나 고소 절차에 대한 접근 부족에 의해 방해받을 수 있다.

3. 본 위원회는, 일부 형태의 인종차별이 여성에게만 유일하고 특수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종차별과 관련될 수 있는 성(gender)적 요소나 문제를 참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위원회의 관행이 여성들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의 행사와 향유에 있어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한 불이익, 장애, 어려움 뿐 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을 평가하고 감시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법을 당사국들과 함께 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4. 따라서 본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형태를 검토함에 있어, 성(gender)적 관점을 통합하고, 성(gender)적 분석을 통합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 최종 견해, 조기 경보 체제와 긴급조치 절차, 그리고 일반권고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기 중 업무방식에 있어 성 통합적 언어 사용을 권장하고자 한다.

5. 인종차별의 성(gender)관련 차원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방법론의 일환으로, 본 위원회는 성(gender)과 인종차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회기 중 업무 방식에 포함시킬 것이다. 이는 특히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것이다.

(a) 인종차별의 형태와 현시(顯示),

(b) 인종차별이 발생하는 상황,

(c) 인종차별의 결과,

(d) 인종차별에 대한 구제조치와 고소 절차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가능성.

6. 당사국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여성에 대한 동 협약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 또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당사국들은 동 협약 하의 권리를 여성이 인종차별 없이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들을 가능한 한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설명할 것을 요청한다. 인종이나 종족의 기원에 따라 분류되고 그러한 인종이나 종족 집단 내에서 다시 성(gender)으로 구분된 자료는 당사국과 본 위원회가, 간과하고 다루지 않을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인종차별의 형태를 규명하고 비교하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1391번째 회의
2000년 3월 20일

제56차 회기 (2000년)

협약 제6조에 관한 일반권고 XXVI

1.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인종차별과 인종 모욕 행위로 인한 피해 당사자 자신이 인식하는 자기 가치와 명성에 끼치는 손해 정도가 종종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믿는다.

2. 본 위원회는, 그 견해에서, 동 협약 제6조에 규정된, 차별의 결과로 입은 손상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하는 권리는 차별 가해자의 처벌만으로는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당사국들에게 공고한다. 동시에, 법원과 다른 관할 당국은 적절한 경우 피해자가 겪은 물질적, 도덕적 손상에 대한 금전 보상 지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1399번째 회의
2000년 3월 24일

제57차 회기 (2000년)

집시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XXVII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탁서, 제9조에 의거하여 제출한 정기 보고서, 그리고 본 위원회가 당사국 정기 보고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채택한 최종 견해를 고려하였고,

집시에 대한 차별 문제에 관한 주제 토론을 조직하여, 본 위원회 구성원들과 유엔의 전문가, 그리고 다른 조약 기구와 지역 기구들로부터 조언을 받았으며,

또한 이해관계가 있는 비정부기구로부터, 이들과의 비공식 회의를 통하여 구두와 서면 정보를 통하여 도움을 받았으며,

협약의 규정들을 고려하여,

동 협약의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집시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다음 조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절한대로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1. 일반적 성격의 조치

1. 동 협약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집시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법률을 검토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2. 국가 기구나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한 차별에 대한 보호와 집시의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전략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이행하며, 단호한 정치적 의지와 도덕적 리더쉽을 발휘한다.

3. 자신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호칭과 자신들이 속하고자 하는 집단에 관하여 집시의 의사를 존중한다.

4. 시민권과 귀화에 관한 법률이 집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 집시 출신의 이민자와 비호신청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6. 계획되고 이행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채택된 모든 조치에서 종종 이중 차별의 피해자가 되는 집시 여성의 상황을 고려한다.

7. 집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관한 사건에서 사법정의가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집시 공동체와 중앙 및 지방 당국 간의 의사소통과 대화의 적절한 방식을 개발하고 권장한다.

9. 관용을 증진하고 양측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조정과 적응을 위한 노력을 장려하고, 차별을 방지하며 모든 사람이 인권과 자유를 완전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하며, 진정한 대화, 협의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을 장려함으로써,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 집시 공동체와 비(非)집시 공동체간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10. 제2차 세계대전 중 추방과 몰살에 의하여 집시 공동체에 가해진 잘못들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보상 방법을 고려한다.

11.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인구 전체에 대해 비차별 정신과, 타인에 대한, 특히 집시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교육한다.

2. 인종 폭력에 대한 보호 조치

12. 집시에 대한 인종적 동기의 폭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어떠한 차별도 없이 집시의 안전과 보전을 보장한다. 또,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가 그러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공무원이든 다른 개인이든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확보한다.

13. 특히 체포와 구금과 관련하여, 집시에 대한 경찰의 불법 무력행사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14. 집시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에 기초한 충돌을 방지하고, 인종적 동기에 기초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과 집시 공동체 및 집시 단체와의 의사소통과 대화를 위한 적절한 조정을 장려한다.

15. 경찰과 다른 법집행 기관에 집시 공동체 구성원의 채용을 장려한다.

16. 집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폭력과 강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과 다른 책임 있는 국가 또는 기관들의 분쟁 후 지역에서의 활동을 증진한다.

3. 교육 분야의 조치

17. 모든 집시 출신 아동들을 학교 제도에 포함시키도록 지원하고, 퇴학률, 특히 집시 소녀들의 퇴학률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하여 집시 학부모, 단체, 지역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8. 2개 국어 또는 모국어 수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집시 학생들의 분리를 최대한 예방하고 막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 교육의 질과 소수자 공동체에 의한 학교에서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집시 공동체의 구성원인 교직원을 모집하며 이(異)문화 간 교육을 장려한다.

19. 교육 현장에서 집시학생 학부모와 협력하여 집시 아동에게 우호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을 고려한다.

20. 집시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나 인종적 괴롭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호하게 행동한다.

21. 유랑 집단(travelling communities)의 집시 아동들을 위한 기본 교육 과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학교에 임시로 입학시키는 것, 야영지에 임시 교실을 설립하는 것, 원거리 교육을 위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것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2. 교육 현장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캠페인들이 집시 소녀와 여성들의 불리한 상황을 고려할 것을 보장한다.

23. 집시 출신 학생의 교사와 교직자, 보조자 양성을 위하여 긴급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한다.

24. 교사들과 집시 아동, 집시 공동체 및 학부모들 간의 대화와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시에서 선택된 보조자를 더 많이 이용한다.

25. 성인의 식자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연령을 넘어선 집시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적절한 교육의 형식과 계획을 확보한다.

26. 모든 적절한 단계의 교과서에 집시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장(章)을 포함하고, 그들의 언어로 제작된 것을 포함하여, 집시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책과 다른 인쇄물의 발행과 배포를 권장하고 지원한다.

4.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27. 집시 공동체 구성원들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상의 차별과 노동 시장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고용의 차별을 금지하는 보다 효과적인 법률을 채택하거나 제정하고, 집시들을 그러한 관행으로부터 보호한다.

28. 공공 기관 및 기구 뿐 만 아니라 사기업에 집시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한다.

29. 공공 계약이나 정부에 의해 착수되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다른 활동 등의 공적 고용에 있어서, 집시에 호의적인 조치 혹은 다양한 기술과 직업에 대한 집시의 훈련 등 가능한,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특별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한다.

30. 주거에서 집시 공동체의 격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집시 공동체와 단체를 대규모 주택 건설, 재건, 보수 관리에 있어 다른 이들과 함께 파트너로서 참여시킨다.

31. 주로 지역 당국과 개인 소유주에 의한 주거지 확보와 주거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집시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인 관행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집시의 거주를 거부하거나 집시를 불법적으로 추방하는 지역적 조치에 대하여 단호히 행하고, 고립되고 의료시설과 다른 설비가 없는 거주지 외곽의 캠프에 집시를 거주시키는 것을 삼간다.

32. 집시 유목집단이나 유랑민들에게 필요한 모든 설비와 함께, 이들의 이동주택(caravans)을 위한 야영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3. 집시들에게 의료와 사회 보장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이 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철폐한다.

34. 극심한 궁핍, 낮은 교육 수준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들의 불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집시들, 주로 여성과 아동 집시들을 위한 의료 분야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이행한다. 집시 집단에 관한 의료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집시 단체와 공동체, 그리고 대표자들을 참여시킨다.

35. 식당, 호텔, 극장, 음악관, 디스코텍과 기타 일반 대중이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모든 장소와 서비스에 대한 집시 공동체 구성원들의 접근과 관련한 차별적 관행을 예방하고, 철폐하며, 적절하게 처벌한다.

5. 언론 분야에 있어서의 조치

36. 동 협약의 규정에 따라, 언론에서의 인종 또는 종족 우월주의, 인종 혐오 사상, 그리고 집시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촉발하는 어떠한 사상도 철폐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37. 편견을 전파하지 않고, 집시 공동체 구성원의 개인이 관련된 사건을 공동체 전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것을 방지 할 특별한 책임에 대하여 모든 언론 종사자들의 자각을 고무한다.

38. 집시의 인권과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집시의 생활, 사회, 문화와 포괄적인 사회 건설의 중요성에 관하여 대중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적인 언론 캠페인을 개발한다.

39.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한 언론에 대한 집시의 접근과 그들 자신의 언론사 설립, 집시 언론인의 양성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

40. 인종적, 차별적, 편견적 언어를 피하기 위하여, 언론 단체의 행동 강령을 통해 언론의 자율 감시 방식(methods of self-monitoring)을 장려한다.

6. 공적생활 참여에 관한 조치

41. 집시 소수민이나 집단이 모든 중앙과 지역 정부 기구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2. 집시 공동체와 관련한 문제를 고려하고 결정을 채택할 때, 중앙과 지역 차원 모두에서 집시 정당, 단체, 대표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방식과 구조를 개발한다.

43. 집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의 최초 단계에서 집시 공동체와 단체, 대표자들을 참여시키고, 그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투명성을 확보한다.

44. 공적생활 및 사회생활, 그리고 집시 아동의 교육과 직업 훈련에의 참여와 같은 자신들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어 집시 공동체 구성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고무한다.

45. 정치적, 정책 결정 및 행정적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시 공무원과 대표자, 그리고 이러한 책임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다음을 권고한다.

46. 당사국들은 정기 보고서에서 적절한 형식으로 집시의 정치 참여에 관한 통계 자료, 성(gender)적 관점을 포함한 집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 그리고 동 일반권고의 이행에 관한 정보 등 자국의 관할권 하의 집시 공동체에 관한 자료를 포함시킨다.

47. 정부 간 조직들은 다양한 당사국과의 협력 및 지원 프로젝트에서, 적절하게 집시 공동체의 상황을 다루고, 그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진보를 지원한다.

48.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고등판무관실 내에 집시 문제에 관한 활동의 초점을 확립할 것을 고려한다.

더 나아가 본 위원회는 다음을 권고한다.

49.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불관용에 관한 세계회의"는 동시대의 가장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이들 가운데 하나인 집시의 위치를 참작하여 상기 권고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1424차 회의
2000년 8월 16일

제60차 회기 (2002)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불관용에 관한(Related Intolerance) 세계회의의 후속 조치를 위한 일반권고 XXVIII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불관용에 관한 세계회의의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의 채택 향후의 이러한 문서를 승인하였거나 또는 보장하도록 고안된 유엔총회 결의 제56/266의 규정을 환영하며,

더반에서 채택된 문서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본적 가치와 기준을 강하게 재확인하였음을 환영하며,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불관용에 대항하는 주요한 문서로 언급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특히 더반 선언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보편적 적용과 완전한 이행이 전 세계의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함을 확인할 것을 주목하며,

인종차별에 대항하는데 있어 본 위원회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한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본 위원회의 더반 세계회의의 후속 조치에 있어서의 책임과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인종차별에 대항하는데 있어 비정부기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반 세계회의에서의 그들의 기여를 환영하며,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항하는데 있어 국가 인권 기구 역할의 중요성과 그러한 기구를 강화하고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더반 세계회의에서의 인식에 주목하고,

1. 당사국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Ⅰ. 동 협약의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

(a)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2005년까지 전 세계가 비준한다는 견지에서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국가들은 동 협약에 가입하도록 한다.

(b) 만약 아직 동 협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선택적 선언(the Optional declaration)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선언을 할 것을 고려한다.

(c) 보고서 제출 관련 지침에 부합하여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동 협약 하의 보고 의무를 준수한다.

(d) 동 협약의 유보를 철회할 것을 고려한다.

(e) 동 협약 제14조의 개인 통보 제도를 대중에게 알리도록 더욱 노력한다.

(f) 동 협약의 국내법 질서에서의 이행 시에 특히 동 협약 제2조 내지 제7조에 관하여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의 관련 부분을 고려한다.

(g)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을 국내적 차원에서의 이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행동 계획이나 기타 조치에 관한 정보를 그들의 정기 보고서에 포함한다.

(h)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을 적절한 방법으로 전파하고, 정기 보고서의 동 협약 제7조에 관한 부분에서 이에 관한 노력에 대한 정보를 본 위원회에 제공한다.

Ⅱ.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

(i) 본 위원회의 최종 견해와 일반권고에 관한 후속 조치를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국내 감시 및 평가 메커니즘을 설립할 것을 고려한다.

(j)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에 이러한 최종 견해와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한다.

(k) 1992년 1월 15일 동 협약 당사국의 14번째 회의에서 채택되고 1992년 12월 15일 유엔 총회 결의 제47/111호에서 승인된 제8조 6항의 개정안을 비준한다.

(l) 동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본 위원회와의 협력을 지속한다.

2. 또한 다음을 권고한다.

(a) 국가 인권 기구는 개별 국가가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본 위원회의 최종 견해와 권고에 관한 후속 조치를 엄밀히 감시한다.

(b) 비정부기구는 본 위원회와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c)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본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d) 권한 있는 유엔 기구는 본 위원회가 그 임무를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을 제공한다.

3. 다음과 같은 의향을 표명한다.

(a)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의 후속 조치를 위하여 특히 인권고등판무관실을 비롯한 유엔 체계내의 모든 관련 기구와 전적으로 협력한다.

(b)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의 권고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된 독립적인 5인의 저명한 전문가와 협력한다.

(c)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의 보다 효과적인 후속 조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인권 조약 기구와 그 활동을 조정한다.

(d) 본 위원회의 위임사항의 실행과 관련한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

1517차 회의
2002년 3월 19일

제61차 회기 (2002)

협약 제1조 1항(혈통)에 관한 일반권고 XXXI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의 어구에 따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인종, 피부색, 성(sex), 언어, 종교, 사회, 사회적 출신, 출생 또는 여타 지위의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상기하고,

"세계 인권 회의의 비엔나 선언과 행동 계획(Vienna Declaration &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의 어구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제를 불문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상기하고,

본 위원회가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불관용에 관한 세계회의의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of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에 관하여 전심의의 지원을 표명한 일반권고 XXⅧ를 재확인하며,

또한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혈통, 그리고 토착민과, 또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에 관한 비난을 재확인하며,

본 위원회의 활동을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한 차별 철폐를 추구하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기초하여,

동 협약 제1조 1항의 "혈통(descent)"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인종(race)"만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 근거를 보충하는 의미를 갖고 적용된다는 본 위원회의 지속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혈통"에 기초한 차별은 인권의 동등한 향유를 무효화 하거나 손상시키는 카스트제도(caste)나 유사한 형태의 선천적 신분 제도와 같은 사회 계층(social stratification)에 기초한 공동체 구성원의 차별을 포함한다는 것을 강하게 재확인하고,

본 위원회의 동 협약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에 주목하여,

혈통에 기초한 차별에 관한 주제의 논의를 조직화하고, 본 위원회의 구성원과 몇몇 정부, 다른 유엔 기구의 구성원,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the Sub-commiss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의 저명한 전문가의 기여를 받았으며,

다수의 관련 비정부기구와 개인들로부터 본 위원회에게 세계 여러 지역의 혈통에 기초한 차별의 정도와 지속 여부에 관한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는 구두 및 서면 정보를 통한 기여를 받았으며,

국내법과 관행의 차원에서 혈통에 기초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현재의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혈통에 기초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한 국가들의 노력을 칭찬하며,

아직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루지 않은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혈통에 기초한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진행된 본 위원회와 정부 간 대화의 긍정적인 정신을 상기하고, 나아가 이러한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하며,

혈통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항한 진행 중인 과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카스트제도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천적 신분 제도와 같이 혈통에 기초한 차별은 동 협약의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강하게 비난하며,

당사국은 그들의 특별한 상황에 적절하게, 다음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1. 일반적 성격의 조치

(a) 당사국의 관할권 하에서, 특히 카스트제도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천적 신분 제도에 기초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를 파악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공동체의 존재여부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에 있다: 선천적인 지위 변경의 불가능 내지 제한, 공동체 외부와의 사회적으로 강제된 혼인의 제한, 주거 및 교육, 공공장소에의 접근, 예배 장소 및 식량 및 식수 등 공공자원에의 접근을 포함한 사적 및 공적 격리, 선천적인 직업 또는 굴욕적이거나 위험한 직업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제한, 부채 노예화에의 종속, 불결함 또는 미천함에 관한 비인간적인 담론에의 종속, 그리고 인간 존엄과 평등에 대한 존중의 부족.

(b) 혈통에 기초한 차별의 명백한 금지를 국내 헌법에 수용할 것을 고려한다.

(c) 동 협약에 합치하도록 혈통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법률을 검토하고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d) 법률과 이미 효력을 발하고 있는 여타의 조치를 단호하게 이행한다.

(e) 혈통에 기초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참여시켜, 동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특별한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구상하고 이행한다.

(f) 혈통에 기초한 집단과 공동체에게 인권의 향유와, 특히 공공 기능, 고용 및 교육에 접근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우호적인 특별 조치를 채택한다.

(g) 기존의 기구의 강화 또는 전문화된 기구의 창설을 통하여,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 구성원의 동등한 인권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제정된 법에 의한 체제를 설립한다.

(h) 혈통에 기초한 차별의 피해자의 상황을 다루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일반 대중에게 교육한다.

(i)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와 다른 사회 집단 구성원과의 대화를 장려한다.

(j) 혈통에 기초한 차별의 현실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의 지역적인 분포와 경제 및 사회적 상황, 그리고 성(gender)적 관점을 포함하여 개별 요소로 세분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여성에 대한 다층적 차별

(k) 계획되고 이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및 채택된 조치에 있어 다층적 차별, 성적 착취 및 강제 매춘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인 여성의 상황을 고려한다.

(l) 혈통에 기초한 차별을 포함하여 다층적 차별, 특히 개인의 안전, 고용 및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m) 혈통에 기초한 차별에 의한 여성의 상황에 대하여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3. 인종격리

(n)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의 격리를 발생시키는 경향에 대하여 감독하고 보고하며, 그러한 격리로부터 도출되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o) 주거, 교육 및 고용을 포함하여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격리의 관행을 예방, 금지 및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p) 일반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등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접근권을 보장한다.

(q)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구성원과 여타 사회 구성요소를 통합한, 혼합 공동체를 증진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거주지에 있어서 모두의 동등한 기준에 따른 접근 가능성을 확보한다.

4.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증오 연설의 유포

(r) 사회적 신분의 우열에 관한 관념이나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에 대한 폭력, 증오 또는 차별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관념을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s) 인터넷을 통해서든,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에 대한 차별 또는 폭력을 촉발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

(t) 언론 종사자에게 혈통에 기초한 차별의 성질 및 발생률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조치를 취한다.

5. 사법행정 (Administration of Justice)

(u) 법률 구조(legal aid)의 제공, 집단소송의 활성화 및 공동체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정부기구의 장려 등을 포함하여,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법 제도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

(v) 적절한 경우, 관련된 사법적 결정 및 공무 활동에 있어서, 혈통에 기초한 차별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할 것을 보장한다.

(w)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기소와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적당한 보상 제공을 확보한다.

(x)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의 구성원을 경찰 및 다른 법집행공무원에 채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y)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에 대한 편견에 의한 부정의를 막기 위해 공무원과 법집행공무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z) 경찰 및 다른 법집행공무기관과 해당 공동체 구성원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한다.

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aa) 관련 국가의 모든 차원의 당국들이 모든 결정에 있어,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관여하도록 보장한다.

(bb)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 구성원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평등 선거 및 보통 선거에 기초한 투표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정부와 입법 기관의 정당한 대표권을 가

질 것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

(cc)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 구성원에게 공적 및 정치적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이러한 참여의 장벽을 철폐한다.

(dd)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에 속하는 공무원과 정치적 대표자를 위한 정치적 정책 결정 및 공공 행정 기술을 향상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한다.

(ee) 혈통에 기초한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폭력이 쉽게 일어나는 영역을 규명하는 조치를 취한다.

(ff)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체 외의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7.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

(gg) 평등과 비차별에 기초한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채택하고, 이행한다.

(hh)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의 빈곤을 근절하고 그들의 사회적 배제 또는 주변화에 맞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ii) 국제금융기구를 포함한 정부간기구가 지원하는 개발 또는 지원 프로젝트가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 구성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러한 기구들과 함께 일한다.

(kk) 고용과 노동 시장에서의 혈통에 기초한 모든 차별 관행을 보다 명확히 금지하는 법률 및 관습을 발전시키거나 다듬는다.

(ll) 공공 기구, 사기업 및 다른 단체에서 취업 지원자들의 혈통 배경을 조사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

(mm) 영향을 받는 공동체 구성원의 거주 및 적절한 주거에 접근하는 것과 관련된 지방 정부 또는 사적 소유자의 차별적인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nn)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 구성원의 보건과 사회보장 서비스에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oo) 보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계획과 이행에 있어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공동체를 참가시킨다.

(pp) 착취적인 아동노동에 대해,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의 아동이 특별히 취약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qq) 부채상환을 위한 노예노동의 문제와 혈통에 기초한 차별과 관련된 열악한 노동조건을 철폐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

8. 교육의 권리

(rr) 공교육 및 사교육 제도가 모든 공동체의 아동을 포함하고, 혈통에 기초하여 어떠한 아동도 배제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ss) 모든 공동체 아동의 탈락비율(drop-out), 특히 여아의 상황에 주의하여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아동의 탈락을 줄인다.

(tt)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들에 대한 공공기관 및 사적기관의 차별과 그들에 대한 어떠한 괴롭힘에도 맞서 싸운다.

(uu) 시민 사회와의 협력하여 비차별 정신과 혈통에 기초한 차별을 믿는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전체 국민에게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v) 혈통에 기초한 공동체에 관하여 고정관념을 전달하거나 비하하는 이미지, 언급, 이름 및 견해를 제시하는 모든 교과서의 언어를 재검토하고, 이를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평등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미지, 언급, 이름 및 견해로 대체한다.

제64차 회기 (2004)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XXX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모든 사람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고,

비국적자, 특히 이민자, 난민, 비호신청인에 대한 인종혐오가 동시대의 인종주의의 주요 근원 중 하나라는 것과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차별, 인종혐오 및 인종주의자의 관행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불관용에 관한 세계회의"에서의 더반 선언을 상기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과 일반권고 XI 및 XX에 기초하여, 동 협약의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검토를 통하여 이민자, 난민 그리고 비호신청인 집단 외에, 일생을 동일 영토 내에서 산 경우에도, 그들이 살고 있는 영토에서 국적을 가질 수 없는 미등록 비시민권자 및 개인들 등 다른 집단 역시 우려되는 것이 명백해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주제 토론을 조직하고, 본 위원회 구성원과 당사국의 기여와 함께 다른 유엔 기구, 전문 기구 및 비정부기구로부터 기여를 받았으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의 비시민권자에 관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관한 행동은 동 협약 규정, 특히 당사국은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질 것을 요구하는 제5조에 기초하여,

다음을 확인한다.

1. 동 협약 당사국의 의무

1. 동 협약 제1조 1항은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있다. 동 협약 제1조 2항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구별하는 것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제1조 3항은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와 관한 당사국의 법규정 어디에서도 특정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다.

2. 제1조 2항은 기본적인 차별 금지 원칙을 제한하는 것을 피하도록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인정되고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동 협약 제5조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할 당사국의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들 중 선거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자에 한정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인권은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들을 국제법 하에서 인정하는 정도까지 향유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간의 평등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4. 시민권 또는 이민자 자격에 따라 구별되는 대우는 만약 이러한 구별의 기준이 동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법적인 목적에 따르지 않거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례적이지 않을 때, 차별이 성립된다. 특별한 조치에 관한 동 협약 제1조

4항의 범위 내에서의 구별은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5. 당사국은 비시민권자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에 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당사국은 그들의 정기 보고서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들의 관할권 하에 있는 비시민 인구에 관한 성(gender), 민족 및 종족의 기원에 따라 세분화한 사회경제적 통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을 권고한다.

이러한 일반 원칙에 입각하여, 동 협약 당사국은, 그들의 특정한 상황에 적절하게,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 일반적 성격의 조치

6. 법률이 동 협약에 합치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히 제5조에 언급된 권리의 실효적이고, 차별 없는 향유에 관하여 법률을 검토하고 적절한대로 수정한다.

7.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보장이 이민 자격에 관계없이 비시민권자에게 적용될 것과, 이러한 법의 이행이 비시민권자들에게 차별적인 효력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8. 비시민권자들, 특히 비시민 노동자의 자녀와 배우자와 관련하여 다층적 차별에 관한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권자의 여성 비시민 배우자와 남성 비시민 배우자에 대한 처우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그러한 관행에 관하여 보고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9. 이민 정책이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하여 개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효과를 갖지 않도록 보장한다.

10. 테러에 대항하는 어떠한 조치도, 그 목적이나 효과에 있어,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차별을 행하지 않도록 하고, 비시민권자가 인종 또는 종족적으로 프로파일링(인종, 집단 표적을 대상으로 경찰이 범죄자 검거를 위해 불심검문 수색하는 행위)하거나 고정화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증오 연설(Hate Speech)과 인종적 폭력(racial violence)에 대한 보호

11.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증오연설이나 인종적 폭력 등 인종 혐오적 태도 및 행동을 다루는 조치를 취하고, 비시민권자의 상황에 관한 비차별 원칙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도모한다.

12.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 비시민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특히 정치인, 공무원, 교육자 및 언론, 인터넷 및 여타 전자 통신 매체에 의해 사회 전체에서 표적화, 낙인화, 고정관념화 혹은 프로파일 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취한다.

4. 시민권에 대한 접근

13. 특정한 비시민 집단이 시민권 또는 귀화에 대한 차별이 없을 것을 보장하고, 장기 또는 영구 거주자의 귀화에 있어 있음직한 장벽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14.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시민권의 박탈은 국적에 대한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의 비차별을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 위반임을 인정한다.

15. 동 협약의 비차별 원칙에 반하여, 일부 경우에 있어서의 장기 또는 영구 거주자에 대한 시민권의 거부는, 그들에게 취업의 기회와 사회적 혜택의 이용에 대해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16. 무국적자를 감소시키고, 특히 아동의 무국적의 수를 줄인다. 예를 들어 그들의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도록 장려하고, 양측 부모 모두 그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 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아동들 중의 무국적자를 감소시킨다.

17. 현재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선임국의 시민들의 지위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한다.

5. **사법행정** (Administration of Justice)

18. 비시민권자가 법 앞의 동등한 보호와 인정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인종적으로 동기화된 폭력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조치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폭력의 결과로서 겪은 손해에 대하여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19. 비시민권자에게 특히 자의적 구금과 관련하여, 안전을 보장하고, 또한 난민과 비호신청자를 위한 시설의 상황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0. 대테러리즘에 있어 구금 또는 체포된 비시민권자들이 국제 인권법과 국제 난민법, 국제 인도법에 합치하는 국내법에 의하여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21. 관련 법률과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비시민권자를 상대하는 모든 공무원이 인권훈련을 포함한 특별훈련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찰 공무원 및 여타 법집행 기관과 공무원에 의한 비시민권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및 차별에 맞서 싸운다.

22. 인종주의적 동기 및 목적으로 저지르는 죄는 엄중한 처벌이 허용되는 가중처벌 상황이 된다는 규정을 형법에 도입한다.

23. 인종차별에 관한 주장이 비시민권자에 의하여 제기되었을 때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공무원에 대해, 특히 차별적인 또는 인종주의적인 행동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24. 비시민권자가 일응 그들이 차별의 피해자로 명백해 보이는 사건을 확립한 경우, 그러한 차별적인 대우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되도록,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차별 관련 민사소송절차에 있어 입증의 책임을 통제한다.

6. **비시민권자의 강제퇴거 및 추방** (Expulsion and Deportation of non-citizens)

25. 당사국 관할권으로부터 비시민권자의 추방 또는 다른 형태의 이동에 관한 법률이 그 목적이나 효력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이나 민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비시민권자가 효과적인 구제조치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강제퇴거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그러한 구제조치를 효과적으로 구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26. 비시민권자가, 특히, 개개인의 개인적 상황이 고려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단적인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

27. 비시민권자를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 또는 영토로 환송하거나 이동시키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28. 비시민권자, 특히 장기 거주자의 경우에 있어서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불균형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강제퇴거를 피한다.

7.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29. 비시민권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 특히 교육, 주거, 고용 및 건강과 관련한 영역에서의 권리 향유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30. 공공교육기관이 당사국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비시민권자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에게 개방될 것을 보장한다.

31. 초·중등 교육에서, 또한 고등 교육에의 접근 가능성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한 비시민권자의 격리된 학교 교육과 비시민권자의 처우에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피한다.

32. 특히 주거의 격리를 지양하고, 주택 공급 기관의 차별적인 관행을 제거하여, 비시민권자와 시민자에게 적절한 주거권에 대한 권리의 동등한 향유를 보장한다.

33. 노동 조건 및 노동 요건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목적 또는 효과의 고용 규칙이나 관행을 포함하여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조치를 취한다.

34. 특히, 비시민가사노동자 등, 노동자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부채노예화(debt bondage), 여권 압류, 불법적 구금, 강간 및 물리적 폭행을 포함한 여타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35. 당사국은 고용 허가서가 없는 비시민권자에게 직업 제공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일단 고용 관계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모든 개인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 및 고용의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36. 당사국은 비시민권자의 적절한 수준의 신체 및 정신 보건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예방, 치료 및 고통 완화(palliative)의료 서비스에 대한 거부나 제한을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7. 비시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성명을 변경하도록 하는 법적 또는 사실상의 요건과 같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시민권자가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38. 인종, 피부색, 혈통 및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기초한 차별 없이 운송, 여객, 음식점, 카페, 영화관, 공원과 같은 일반 공중에 의해 사용되는 어떠한 장소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시민권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39. 이 일반권고는 일반권고 XI(1993)을 대체한다.

형사 사법 제도의 운영 및 작용에 있어서의 인종차별 방지에 관한 일반 권고 XXXI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인종차별의 정의를 상기하고,

당사국은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동 협약 제5조(a)를 상기하며,

당사국은 관할권 하에서의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에 대항하여 권한 있는 국가법원 및 기타 기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며 또한 그러한 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하는 권리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동 협약 제6조를 상기하고,

“일부 국가의 형사제도 (penal system) 작용 및 법의 적용 뿐 만 아니라, 특히 구금되었거나 수감된 사람들 중 특정 집단 구성원이 지나치게 많은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 법 집행에 책임 있는 기관 및 개인의 행태와 태도에 있어서 일부 국가에 지속되고 있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불관용을 규탄한다”고 표명한 2001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된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의 제25항을 언급하며,

형사 사법 제도에서의 차별에 관한 인권의 증진 및 보호(E/CN.4/Sub.2/2005/7)를 위한 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언급하며,

인종주의, 인종차별, 인종혐오 및 불관용의 현대적 형태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를 염두에 두고,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중 특히 “난민은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제16조를 언급하며,

동 위원회의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및 집시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XXVII (2000년) 및 혈통에 기초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XXIX (2002년),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XXX (2004)의 사법제도 작용과 관련된 견해를 염두에 두고,

사법 제도가 공평하고 인종주의, 인종차별 혹은 인종혐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간주될 수 있더라도, 인종 혹은 종족적인 차별이 법제도의 운영 및 작용에 있어 존재하는 경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사법의 역할임이 분명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에 의한 지배,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 공정한 재판의 원칙 및 독립적이고 공평한 재판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성립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떠한 국가도 적용되는 법의 유형이나 유효한 사법제도가 당사자주의인지 규문주의 혹은 이들의 혼합인지의 형태를 불문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행정 및 작용에 있어서 인종차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운영 및 작용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국민의 일부 계층과 어떤 법집행 공무원에게 편견과 인종혐오 및 불관용의 정서를 촉발시키고 있는 이민과 인구이동의 증가의 결과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안보 정책 및 반테러리즘 조치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반아랍 혹은 반무슬림정서, 또한 그 반작용으로 반유대정서가 많은 국가에서 조장되기 때문에, 차별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형사 사법제도의 운영과 작용에 있어서, 특히, 이민자, 난민, 비호신청자 및 무국적자를 포함하여 비시민권자, 유랑민/집시, 토착민, 피난민, 혈통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개인 등 인종 및 종족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 주변화, 비통합에 노출되는 취약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들의 인종이나 성, 연령으로 인한 다층적 차별을 받기 쉬운 앞서 언급된 집단에 속하는 여성과 아동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그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결심하고,

당사국에 대한 다음의 권고를 공식화 한다.

Ⅰ. 일반조치

A. 형사 사법 제도의 운영 및 작용에서의 인종 차별의 존재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차별을 증명하기 위한 지표 조사

1. 사실 지표

1. 당사국은 다음의 인종 차별의 적절한 지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 공격이나 다른 범죄의 피해자, 특히 경찰 공무원이나 다른 국가 공무원에 의해 자행된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된 동 협약 전문 마지막 항에 언급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수와 백분율.

(b) 한 국가에서의 인종 차별 행위에 관한 고소, 기소, 유죄판결이 부재하거나 극히 미비함. 이러한 통계는 일부 당사국들의 믿음과는 반하여, 반드시 긍정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부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들이 사회적인 비난이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제한된 자원을 가진 피해자가 사법절차의 비용과 복잡성을 두려워하거나, 경찰

및 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의 부족, 또는 당국이 인종주의에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 충분히 경계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c) 동 협약 전문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된 집단 구성원에 대한 법집행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정보의 불충분 또는 부재.

(d)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범죄 비율, 특히 경범죄나, 마약 및 매춘 관련 범죄의 사회적 배제나 통합 실패의 지표로서의 비례적으로 높은 범죄 비율.

(e) 감옥이나 유치소, 형사시설, 정신감호시설 혹은 공항내 보호소의 유치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와 백분율.

(f) 법원의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더 가혹하거나 부적절한 선고 판결.

(g) 경찰, 판사와 배심원을 포함한 사법제도, 그리고 다른 법집행 부서에서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불충분한 대표성.

2. 상기의 사실 지표들이 주지되고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당사국은 개인 정보의 기밀성, 익명성 및 그 보호의 기준을 준수하며, 경찰, 사법 및 수감 기관, 이민국으로부터 정기적이고 공공적인 정보 수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특히 당사국은 인종주의, 인종혐오 행위에 관련된 고소, 기소 및 유죄 판결 뿐만 아니라, 보상이 가해자에 이루어지거나 공적 기금으로부터 국가 배상 계획에 의해서든지, 그러한 행위의 피해자에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포괄적 통계와 기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법적 지표

4. 다음은 인종차별의 잠재적 원인의 지표로 간주되어야 한다.

(a) 인종차별에 관한 국내법에서의 간극. 이에 관하여 당사국은 동 협약 제4조의 요건을 준수하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인종차별적 행위, 특히 인종적 우월성 혹은 증오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인종 혐오의 선동, 폭력이나 인종적 폭력의 선동 뿐 만 아니라 인종주의적 선전활동 및 인종주의 단체에 참여를 의법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당사국은 인종적 사유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중 처벌되는 사유가 성립한다는 효력을 가진 규정을 그들의 형사법에 수용하도록 장려된다.

(b) 어떤 국내법, 특히, 테러리즘, 이민, 국적, 비시민권자의 입국 거절 및 이송에 관한 입법과 특정한 집단 또는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을 합법적인 근거 없이 불이익을 가하는 효과를 갖는 입법의 잠재적인 간접적 차별의 효과. 당사국은 그러한 입법의 차별적인 효과를 철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의 동 협약 전문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을 존중하고자 해야 한다.

B. 형사 사법 제도의 운영 및 작용에 있어서 인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발전적 전략

5.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목적의 국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a) 인종차별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법, 특히 특정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자행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러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법, 혹은 정당한 근거가 없거나 비례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비국적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철폐한다.

(b) 경찰 및 사법체계, 교정기관, 정신치료감호소, 사회적 및 의료적 서비스 등에서 일하는 법집행 공무원을 위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권, 관용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 우애 및 이문화간 관계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훈련을 개발한다.

(c) 편견에 저항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경찰 및 사법기관과 동 협약 전문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한 다양한 집단의 대표자들의 대화 및 협력을 증진한다.

(d) 경찰 및 사법제도 속에서 인종적 및 종족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적절한 대표성을 증진한다.

(e)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여 토착민의 전통적인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확보한다.

(f) 동 협약 전문 마지막 항에 언급된 집단에 속하는 수감자들을 위한 감옥제도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풍습을 고려한다.

(g) 대량 인구이동의 상황에서 사법제도의 작용을 위해, 특히 실향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방으로 분산된 법원을 설치하거나, 이동법원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실향민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와 제도를 설립한다.

(h) 분쟁 후 상황에서, 특히, 관련 유엔 기구가 제공하는 국제적인 기술적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분쟁에 연관된 국가영역 전체에서 법제도의 재건과 법의 지배를 재확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i) 구조적 인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전략이나 행동 계획을 이행한다. 이러한 장기 전략은 구체적 목적과 행위 및 진행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전략들은 인종주의나 인종혐오주의적 사건의 예방, 기록, 조사와 기소, 모든 공동체 내에서 그들과 경찰 및 사법제도와 관계에 관한 만족도의 측정 및 사법제도 내에 다양한 인종적 또는 종족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채용과 승진을 위한 지침들을 포함해야 한다.

(j) 독립적인 국가 기구에게 인종차별에 대항한 국가 행동계획과 지침 하에서의 진행 상태를 추적, 감시 및 측정하고, 발견되지 않은 인종차별 현상을 규명하며 개

선을 위한 권고와 제안을 제출할 업무를 위임한다.

Ⅱ. 인종주의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인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A. 법과 사법에 대한 접근

6. 동 협약 제6조에 따라, 당사국은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종 차별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가 사인이나 공무원에 의하여 자행되었음을 불문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와 그러한 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하는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7. 인종주의 피해자의 사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신의 권리를 종종 자각하지 못하는 가장 취약한 사회적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 이러한 점에 있어, 당사국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무료 법률 조력 및 자문센터, 법률정보 센터 및 조정과 중재센터와 같은 기관을 활성화해야한다.

9. 당사국은 또한 주변화된 공동체의 권리 보호와 차별방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B. 고소접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있는 사건 발생의 보고

10. 당사국은 동 협약 전문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웃, 지역, 집단 거주시설, 캠프, 센터 등에 적절하며 접근이 쉬운 경찰 서비스를 확보하여, 그러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소가 신속히 접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권한 있는 부서는 인종주의 행위의 피해자를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경찰서에서 접수하도록 교육받아, 그들의 고소는 즉시 기록되고, 조사는 지연 없이 효율적이며 독립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종주의나 인종혐오주의 사건관련 문서는 보관되고 자료화되어야 한다.

12. 경찰공무원이 인종주의적 행위에 관한 고소의 수용을 거절한 것은 징계 혹은 형사상 제재가 따라야 하며, 만일 여기에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면, 제재는 강화되어야 한다.

13. 반대로, 모든 경찰 공무원 혹은 국가에 고용된 자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특히 인종차별에 근거한 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명령 또는 지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모든 공무원이 이러한 권리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장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14. 고문 또는 부당한 대우 및 처형에 대한 주장이 있는 경우, "탈법적, 임의적, 약식 처형의 효과적 방지 및 조사에 관한 원칙"[1]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2]에 따라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C. 사법 절차의 착수

15. 당사국은 검사 및 검찰당국에게 모든 인종적 동기에 의한 범죄는 사회적 통합 및 사회 그 전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인종주의적인 동기에 의한 경범죄를 포함한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기소하는 것의 일반적 중요성을 상기시켜야 한다.

16. 절차의 착수에 앞서 당사국은 또한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권과 양립 가능한 관습, 중재나 조정 등 분쟁해결에 있어서 인종주의적 행위의 피해자에게 유용한 선택을 제공하며 사회적 낙인이 덜 부가되는 준사법적 절차를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1)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 1989/65(1989년 5월 24일)에 의하여 권고.
2) 유엔총회 결의 55/89(2000년 12월 4일)에 의하여 권고.

17. 인종주의적 행위의 피해자가 보다 쉽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조치를 취한다.

(a) 인종주의와 인종혐오의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또는 형사절차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다른 유사한 절차에 비용의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같이, 절차상의 지위와 그러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단계를 제공.

(b)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사법 협력과 무상으로 변호인의 조력 및 통역을 포함한 법률구조의 부여.

(c) 피해자가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보장.

(d)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을 어떠한 형태의 위협 또는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

(e) 정부 대리인에 대해 고소가 제기된 때에는 조사 지속기간 동안 그의 직무정지의 가능성을 제공.

18.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배상 계획이 있는 경우, 당사국에서는 그들의 국적이나 거주 지위를 불문하고 차별 없이 모든 피해자가 이러한 계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D. 사법제도의 작용

19.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법제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a) 신문절차 및 법정 심리 동안 판사가 고소진술을 듣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 증인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반대증인에 반대신문하며,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며 절차의 진행에 대해 고지 받을 수 있는 등 모든 절차에서 그들에게

적절한 지위를 부여한다.

(b) 심리, 심문이나 대면이 인종주의에 관한 필요한 감수성을 갖춘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인종차별 피해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그들을 차별이나 편견 없이 대한다.

(c)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의 판결을 보장한다.

(d) 인종차별 결과로 인한 물질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보장한다.

Ⅲ. 사법절차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에 대한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조치

A. 질문, 신문 및 체포

20. 당사국은 실제에 있어, 어떤 사람의 피부색이나 인종적 혹은 종족적 집단의 특성 또는 소속의 물리적 외양에만 근거를 둔 질문, 신문 및 체포 혹은 특정인을 더 큰 혐의에 노출시키는 프로파일링(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경찰이 범죄자 검거를 위해 불심검문, 수색을 하는 행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 당사국은 국가 공무원, 특히 경찰 및 군 종사자, 관세 기관 및 공항, 형사시설, 사회적·의료적 정신 서비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자행된 동 협약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게 대한 폭력,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및 모든 인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22. 당사국은 “법 집행 공무원의 강제력과 총기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3]에 부합하여, 비례성과 엄격한 필요성이라는 일반적 원칙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23. 당사국은 체포된 자들이 어떤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족적 집단에 속하든지, 그들에게 국제인권문서(특히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보장된 기본적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임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수감되지 않아야 하며, 체포 시에는 그 이유를 통고받아야 하며, 통역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에 보장된 영사 보호를 받아야 하며, 난민의 경우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연락을 취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24. 행정적 보호 시설이나 공항의 보호 시설에 유치되어 있는 자들의 경우, 당사국들은 그들에게 충분한 일정 수준의 생활조건을 향유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25. 마지막으로 동 협약 전문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집단에 속하는 자들의 신문 혹은 체포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여성 혹은 미성년자들의 특별한 취약성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심해야 한다.

B. 재판 전 구금

26. 재판 전 구금 되어있는 사람들 중 매우 높은 비율이 비국적자 혹은 동 협약 전문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집단에 속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통계를 고려하여, 당사국들은 이하를 보장해야 한다.

(a) 특정 인종, 종족 또는 이상에서 언급한 집단에 속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법적으로 혹은 사실적으로 그들을 재판 전에 수감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러

3) 제8차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1990년 8월 27일-9월 7일. 하바나)에 의해 채택.

한 재판 전 수감은 법에 의해 명시된 객관적 사유, 예를 들어 도주의 위험성, 증거 인멸 혹은 증인 협박의 위험, 공공질서의 혼란의 심각한 위협과 사유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

(b) 계류 중인 재판의 당사자의 석방을 위한 보증금 혹은 보석금의 요건은 당해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해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의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이러한 요건이 당해 집단의 사람들에게 불리한 차별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c) 계류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기 위한 조건으로 종종 요구되는 보증요건은(일정한 주소, 확정된 직업, 안정적인 가족관계) 당해 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 특히 여성 혹은 미성년자인 경우 그들의 상황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d) 계류 중인 사건을 위해 수감된 당해 집단에 속한 당사자들은 관련 국제규범에 의거하여 수용자들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향유해야 한며, 특히 당사자들의 특유한 상황에 적절한 권리 즉, 종교, 문화, 음식에 관한 그들의 전통을 존중받을 권리, 가족과 교류할 권리,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적절한 경우 영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

C. 재판과 법원의 판결

27. 재판 이전에 당사국들은, 특히 토착민의 구성원의 경우, 가해자의 문화적 또는 관습적 배경을 고려해, 적절한 경우 범죄를 다루는 비사법적 혹은 준사법적 절차를 우선할 수 있다.

28. 일반적으로 당사국들은 동 협약 전문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관련 국제인권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다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29.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는 경찰 당국, 사법 당국 혹은 다른 공공기관이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들의 유죄여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특히 특정 인종 혹은 종족에 속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혐의를 두어서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상의 기관들은 대중매체가 특정 집단의 구성원, 특히 동 협약 전문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집단의 구성원에게 오명을 씌울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퍼뜨리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통역에 대한 권리

30. 이러한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당사국이 변호인과 통역이 무료로 배정되는 것과 함께, 동 협약 전문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집단의 구성원에게 법적 지원이나 조력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대한 권리

31. 당사국들은 판사, 배심원 혹은 사법기관직원들이 인종적 혹은 외국인 혐오주의적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히 노력해야 한다.

32. 당사국들은 특정 집단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체계의 운영과 판사의 결정에 대한 이익단체, 이데올로기, 종교, 교회의 모든 직접적인 영향을 방지해야 한다.

33. 이러한 견지에서 당사국들은 2002년에 체결된 “사법적 행위에 대한 뱅갈로어 원칙(Bangalore Principles of Judicial Conduct, E/CN.4/2003/65, annex)”을 참작할 수 있다. 이 결의는 다음을 권고한다.

- 판사들은 사회의 다양성과 배경, 특히 인종적 출신에 연관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 판사들은 언행에 있어서 인종적 혹은 여타 출신에 따라 특정인 혹은 집단에 대해 편견을 나타내서는 아니 된다.

- 판사들은 정당하지 않은 차별없이 사건당사자, 증인, 변호인, 법원공무원과 자신의 동료 등 모든 사람들을 적절히 배려하여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 판사들은 자신의 지시 하에 있는 사람 혹은 변호사들이 피부색, 인종, 국적, 종교, 성적, 또는 다른 부적절한 근거로 특정인 혹은 집단에 대한 편견을 표시하거나 차별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D. 공정한 처벌의 보장

34. 이 점에 있어서, 당사국은 피고인이 특정 인종 혹은 종족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가중된 처벌을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35. 이 점에 있어 특정한 범죄에 대한 최단기형과 의무적 구금의 체제 및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국가에 있어서 사형제도에 대하여, 보고서들에 의하면 이러한 형들이 특정 인종 혹은 종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집행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당사국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36. 토착민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당사국은 특히 "독립국 내의 토착민들과 부족민들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69호"를 고려하여, 그들의 법률체계에 더 잘 순응될 수 있는 대안적 구금이나 다른 형태의 처벌을 우선시해야 한다.

37. 일반법 하의 처벌에 더하여, 관련국으로부터의 이송, 추방, 입국금지같이 비국적자에게만 적용되는 처벌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법률에 명시된 공공질서 관련의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만, 당사자들의 가족생활의 보호와 그들에게 보장된 국제적인 보호를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E. 형의 집행

38. 동 협약 전문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집단에 구성원들이 복역 중일 경우, 당사국들은,

(a) 관련 국제 규범에 따라 수용자들이 부여받은 모든 권리를 그 구성원들이 향유함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그들의 상황에 특별히 부합되는 권리들로, 종교적, 문화적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 음식에 관한 전통을 존중받을 권리, 가족과 교류할 권리,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 기본적 복지급여에 관한 권리 및 적절한 경우 영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수용자에게 의료와 정신치료 및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b) 권리를 침해당한 모든 수용자에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c) 이러한 점에 있어 이 분야에 관한 유엔 규범을 준수해야 한고. 특히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4]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기본 원칙",[5]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6]을 준수해야 한다.

(d) 적절한 경우 외국인 수형자에게 자신의 출신국에서 복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 수형자 이송에 관한 국내 입법 및 국제적 혹은 양자 협약의 규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9. 더 나아가 당사국에서 수용 시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독립적 기관은 인종차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인종 문제와 민족 집단 및 동 협약 전문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기타 취약한 집단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4) 제1차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1995년 8월 22일-9월 3일, 제네바)에 의해 채택 되고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6 C (XXIV) (1957년 7월 31일) 및 2076 (LXII) (1977년 12월 14일)에 의해 승인됨.
5) 유엔총회 결의 45/111(1990년 12월 14일)에 의해 채택되고 공포됨.
6) 유엔총회 결의 43/173(1988년 12월 9일)에 의해 채택.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감독 기관은 효과적인 방문과 청원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40. 비국적자에게 이송, 추방 혹은 입국금지가 선고된 경우, 당사국들은 인권과 난민에 관한 국제 규범에서 도출된 강제송환금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심각한 인권 유린의 위험이 있는 국가 혹은 영토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41.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동 협약 전문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집단에 속하는 여성과 아동에 관하여 그들이 형 집행에 관한 특별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특히 토착민과 같이 특정 공동체에 속한 가정의 어머니와 여성들이 직면할 수 있는 특별한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Ⅲ. GENERAL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쇄일 | 2006년 8월 일
발행일 | 2006년 8월 일

발행인 | 조 영 황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 (02) 2125-7932
팩 스 | (02) 2125-9738

인 쇄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비매품>